

2005. 10. 19.

제122회 임시회 산건위 제1차회의

조 례 안 검 토 보 고

- ① 거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안
- ②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거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조례안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05. 10. 12.

나. 제출자 : 신 주 범 의원 외 6명

다. 회부일자 : 2005. 10. 14.

라. 의안번호 : 제2005 - 56호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우리 농촌은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가속화로 이농현상과 고령화가 계속되고, 농업의 유지 발전을 위해 대농가 중심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농가는 농업여건의 불량과 노동력의 감소로 생산력이 저하되어 경제적 어려움 속에 생활환경이 점차 낙후되는 실정으로,
-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은 도시계획 지역 외의 지역으로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며 소유농지 5,000m² 이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함(안 제3조)
- 사업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영농편의사업, 농기계 구입, 소득증대사업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으로 함(안 제4조)

- 지원 기준은 단위 사업이 50만원 이상 500만원의 이하로, 지원액은 사업비의 50% 이내로 하며, 농가당 1회 200만원 이하, 1년에최고 300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 5조).
- 선정기준은 농지소유 면적 3,000m² 이하를 1순위로 하고 차순위로 주거환경 개선, 소득증대 사업 등의 순서로 함(안 제 6조)
- 매년 3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시행토록 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도·농간의 격차가 심화되며, 이농현상이 늘어나고

농촌을 지키고 있는 인구의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노동력 감소는 물론, 농촌의 활력이 더욱 떨어져 생활환경이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이 점차 낙후되는 현실에서,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비교적으로 정부의 농업 정책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저소득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생활주변 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고 절실한 실정으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

- 안 제3조(지원대상) 예산의 한계선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5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 안 제4조(사업대상)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농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5조(지원기준) 단위 사업당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되, 농가당 1회에 200만 원 이내로 하고, 총 지원액이 연간 3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나,
3인 이상의 공동사업장은 예외 규정을 두어 신축성을 확보한 것은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선정기준) 예산이 부족할 경우 우선순위를 조례에서 정하여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사업의 신청) 군수가 매년 3월말까지 선정하여, 대상자선정 후 사업시행토록 함
- 안 제9조(준용) 자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여 보조금 지급의 통일성을 기함.
- 안 제10조(이중 지원금지) 같은 사업에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으며.
- 동 조례는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5조
- 집행부 제출의견 검토서